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483

발의연월일 : 2026. 4. 21.

발 의 자 : 이인선・김성원・박충권
고동진・정동만・김상훈
성일종・이종배・조지연
강대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국민경제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부가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격 지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손실은 정부가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가격 통제는 민간사업자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력한 행정 조치임에도 현행 재정지원 규정은 임의 조항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감염병 예방 조치 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 재정지원 규정을 손실보상 규정으로 변경하여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상을 의무화하고, 관련 사항의 심의를 위한 석유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석유정제업자 등의 손실을 적기에 보상하도록 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정부는 필요 시 제1항에”를 “제1항에”로, “최저액 지정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최저액의 설정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5장에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손실보상) ① 정부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지정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심각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3조의3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

한 후 신청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제23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하여 석유를 판매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23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손실보상 및 환수의 대상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손실보상의 기준, 지급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23조의3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의3(석유손실보상심의위원회) ① 제23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석유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차관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손실보상 또는 석유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손실보상의 기준, 지급금액 및 시기에 관한 사항

2. 손실보상금의 산정 및 상환·반납에 관한 사항

3. 손실보상금의 감액·미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손실보상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3조에 따른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22호)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 ①·② (생 략) ③ 정부는 필요 시 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지정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최저액의 설정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의2(손실보상) ① 정부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지정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심각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3조의3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제23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하여 석유를 판매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23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손실보상 및 환수의 대상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손실보상의 기준, 지급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23조의3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23조의3(석유손실보상심의위원회) ① 제23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석유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차관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손실보상 또는 석유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손실보상의 기준, 지급금액 및 시기에 관한 사항 2. 손실보상금의 산정 및 상환·반납에 관한 사항 3. 손실보상금의 감액·미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손실보상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